

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-711호

「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·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5일

대구광역시 남구청장



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「도서관법」에 명시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조례 규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국민권익위 공공시설 사용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경감 등 규제 완화 권고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취소 일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환 (안 제9조)
- 「도서관법」에 명시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(안 제20조제1항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

3. 조례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7. 5. ~ 2024. 7. 25.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(참조 : 평생교육과장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-1
(대명동, 대명어울림도서관 4층 사무실)
(우편번호 : 42469)
- 전화번호 : (053)664-3552 팩 스 : (053)664-3559
- 이 메 일 : alfs987@korea.kr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- 의 건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““도서관자료”(이하“자료”라 한다)란”을 ““자료”란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시설물사용료”란 도서관시설,부대시설의 사용”을 ““시설
물이용료”란 도서관시설, 부대시설의 이용”으로, “사용자”를 “이용자”로 한다.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출 할”을 “대출할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시설의 사용)”을 “(시설의 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목적”을 “이용 목적”으로, “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
용허가”를 “시설이용 신청자에게 이용 허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독
서밋”을 “독서 밋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이바지 할”을 “이바지할”로
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이용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그 밖의 시설 신청 및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
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사용허가 취소 등)”을 “(이용허가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
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이용허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
“사용”을 “이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
호 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이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사용 할”을 “이용
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이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
5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의 제목 “(사용료의 감면)”을 “(이용료의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
호 외의 부분 중 “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”를 “제6조제4항에 따른
이용료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사용료의 반환)”을 “(이용료의 반환)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9조제1호 중 “구의”를 “대구광역시 남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”로, “때”를 “경우: 이용료의 전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사용이 불가능한 때”를 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: 이용료의 전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전액

4. 이용개시일 후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: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사 및 전자정보”를 “복사 및 전자정보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불가능 할”을 “불가능할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지역특성”을 “지역 특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본관”을 “분관”으로, “일부위임 위탁운영 할”을 “일부를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구광역시 남구”를 “구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민간실비”를 “민간 실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”을 “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원칙으로 하며, 재료비·교재비 등의”를 “원칙으로 하며, 재료비·교재비 등의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위탁 하고자하는”을 “위탁하고자 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위탁 자료”를 각각 “위탁자료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기증 받”을 “기증받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서관운영위원회”를 “제20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자료는”을 “자료(기증자료를 포함한다)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도서관의”를 “「도서관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문인사및”을 “전문인사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업무팀장”을 “도서관 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심의안건”을 “심의 안건”으로 한다.

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할”을 “해촉할”로 한다.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료폐기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자료폐기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증받은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(이용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의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1]

시설 이용료(제6조 관련)

구 분	이용기준	평 일	토·일, 공휴일	비 고
대강당 (기본이용료)	오전 (09:00~13:00)	30,000원	50,000원	○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의 이용이라도 기본 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. ○ 기본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한다.
	오후 (13:00~17:00)	30,000원	50,000원	
빔프로젝트	1회	10,000원		○오전, 오후를 각 1회로 본다.
무선마이크	1회(개당)	5,000원		
냉·난방	1회	30,000원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<u>도서관자료</u>”(이하“<u>자료</u>”라 한다)란 도서관에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“<u>시설물사용료</u>”란 <u>도서관시설,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 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자료 열람과 대출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료를 관외로 <u>대출</u>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<u>시설의 사용</u>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<u>사용목적</u>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>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</u>를 할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“<u>자료</u>”란 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<u>시설물이용료</u>”란 <u>도서관시설, 부대시설의 이용</u>----- ----- <u>이용자</u>----- ----.</p> <p>제4조(자료 열람과 대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출할</u>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<u>시설의 이용</u>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 <u>이용 목적</u>----- ----- <u>시설 이용 신청자에게 이용 허가</u>---</p>

수 있다.

1.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
 2. (생략)
 3.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
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
있는 행사
 4. (생략)
-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
다.

<신설>

제7조(사용허가 취소 등) 구청장은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
를 취소·변경과 그 밖에 필요
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
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
한 경우
3.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
용허가를 받은 경우
4. 시설을 사용 할 경우 도서관
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
판단될 경우

<신설>

-----.

1. 독서 및 -----
 2. (현행과 같음)
 3. -----
----- 이바지할 -----

 4. (현행과 같음)
- ④ --- 이용료-----
--.

⑤ 그 밖의 시설 신청 및 이용
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
이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이용허가 취소 등) -----

----- 이용허가-

-----.

1. -----
-- 이용-----
2. 이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
하거나 이용료를 기일 내 납
부하지 않은 경우
3. ----- 이
용허가-----
4. ---- 이용할 -----

5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

제8조(사용료의 감면) 구청장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
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
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
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
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
수 있다.

1.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
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

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
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
3.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
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
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

<신설>

제10조(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
쇄) ① (생략)

②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
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이용료의 감면) -----

-----제6조제4항
에 따른 이용료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이용료의 반환) 구청장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용료
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
있다.

1. 대구광역시 남구(이하 “구”라
한다)의 ----- 경
우: 이용료의 전액

2. ----- 그 밖에 -----
----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:
이용료의 전액

3.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
자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
전액

4. 이용개시일 후 이용자가 취
소한 경우: 이용한 기간에 해
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
금액

제10조(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
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복사 및 전자정

보를 인쇄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2조(변상책임)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, 비품과 시설물(이하 “자료 등”이라 한다)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,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3조(도서관 등의 연계)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특설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위임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설립·운영하지 아니하는 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·협력할 수 있다.

보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변상책임) ① -----

----- 불가능
할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도서관 등의 연계) ① ---

----- 지역 특
성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분관-----
----- 일부를 위임하거나 또
는 위탁할 -----
-----.

④ ----- 구-----

-----.

제15조(자원봉사자 활용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평생학습) ① (생략)

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,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재료비·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.

제17조(위탁자료)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·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

제15조(자원봉사자 활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민간 실비 -----
-----.

제16조(평생학습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강
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원
칙으로 하며, 재료비·교재비 등
의 -----
-----.

제17조(위탁자료) ① -----

----- 위탁하고자 하는 -----

-----.

② 위탁자료-----

-----.

있다.

③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기증자료) ① 구청장은 개인과 기관·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 공간, 사립문고와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.

제19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와 제적)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,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과 이관할 수 있고,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.

제2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도서관

③ 위탁자료-----

-----.

제18조(기증자료) ① -----
----- 기증받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제20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 -----

제19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와 제적) -----

----- 자료(기증자료를 포함한다)는 -----
-----.

제2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「도

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·교육계 전문인사 및 구의원,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.

제2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 전문인사 및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도
서관 업무팀장-----

-----.

제2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-----
----- 심의 안건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 해촉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